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자료제출 거부 불가〉

■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15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유상범 · 엄태영 · 조배숙 · 권영세 · 박충권 · 이인선
박수영 · 구자근 · 윤영석 · 최은석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6. 1. 16.

3. 회 부 일 : 2026. 1. 19.

※ 의안번호 : 161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 사항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u>자료의</u>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 ----- ----- ----- <u>자료(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다)의</u> ----- ----- -----.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에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	④ ----- ----- <u>제3항</u> ----- -----

현행	개정안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 -----. ----- ----- -----. ⑤ ----- ----- -----제3항----- ----- ----- -----.

현행법¹⁾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요구를 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국가기밀 또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거나, 친족 등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²⁾

- 1)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 2) 「**인사청문회법**」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공직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이 정보 주체인 공직후보자나 그 친족의 부동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기관이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³⁾ 등의 개인정보 포함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⁴⁾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상 예외사유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를 명시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원활히 확보하고 인사청문을 충실히 실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서류등 제출요구가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⁵⁾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염려 내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자료제출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에 비추어보면,⁶⁾ 개정안은 자료제출과 관련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24헌나6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중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회증언감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본문). (중략) 또한 피청구인은 일부 자료에 대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수용시설 수감자의 출정 관련 자료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를 제출 거부의 사유로 들기도 하였으나,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다른 법률을 이유로 제출

을 것으로도 보임.

다만,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도 헌법상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⁷⁾ 등이 준수되어야 하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점⁸⁾ 등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목적 외로 활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⁹⁾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가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안번호 제3186호, 제6819호, 10972호, 제11461호 및 제14400호)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표-2] 유사 개정안별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의원	주요내용
3186	허영의원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르도록 함. 단,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외함
10972	박준태의원	
6819	김용만의원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유가 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후략)

7)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8) 사상이나 신조에 관한 정보, 범죄나 전과사실, 병력 등과 같이 그 자체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드러내는 민감한 개인 정보의 경우에는 그 수집 내지 보유만으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활용에 있어도 특별히 강화된 보호를 필요로 함(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전원재판부 결정).

9)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4. 11. 28.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예외를 두지 않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제의를 요구한 적이 있음. 2025. 1. 8.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한 결과 부결되었음.

의안번호	대표발의의원	주요내용
11461	김예지의원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르도록 함. 단, 제출된 자료의 공개로 개인정보나 사생활 등의 부당한 침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비공개열람 또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14400	민형배의원	국가기밀, 근친자의 형사책임, 업무상비밀에 해당하거나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르도록 함

문의처
02)6788-5015